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24. 07. 16. (화)	총 5페이지	담당자	김수현 변호사/상담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9-1 은혜빌딩 6, 7층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제기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4. 01. 16.(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하 '제청법원' 이라 한다)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 중 '간음' 에 관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고 알렸다.

※ [보도자료 2024. 1. 16.]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위헌제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948&board_md=view

심판대상조항은 1953년 형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67년 동안 개정되지 못하다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피해가 처참히 드러나면서 202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개정됐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법원까지 나서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연령 상향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탄식하며 아동 인권이 후퇴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법률지원단 공동대응팀(차민정, 김수현, 김영주, 이기연, 황인형 변호사)을 구성해 위헌제청에 맞서 헌법재판소 등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위 위헌제청 사건(2022헌가40)과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106, 2022헌바166, 2022헌바257, 2023헌바142, 2023헌바251, 2023헌바277, 2024헌바49, 2024헌바161, 총 8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였고, 그 결과 2024년 6월 27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결과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경우,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보호법익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제출한 반박 의견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단지 성관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판단이다.

즉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능력·판단능력·방어능력이 부족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인터넷 채팅이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획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자연스러운 이성 교제인 것처럼 환심을 산 뒤에 성행위에 응하도록 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만연한 상황 등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적확히 헤아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전한 성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미성년자의 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처벌의 불가피성

또한,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건 청구인들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중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발달정도나 개별적이고 구체적 상황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하여야 할 만큼 그 개인별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아가 “입법자로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 행위유형마다 정확한 불법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 서열에 따라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설명하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을 부여한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고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실시한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19세 이상인 자의 성행위 상대방이 16세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

는 것밖에 없다.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한 바, 청구인들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된 당해 사건의 개요를 살피고, 청구인들이 도대체 뭐가 억울해서 헌법소원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래는 당해 결정의 전제가 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표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래 표를 통해 어떤 청구인들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을 하면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알게 되기를 바란다.

※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 정리

순번	연령		경로	범행	선고형	관할법원
	피고인	피해자				
1	19세	15세	페이스북 채팅방	1회 간음	재판 중	대구
2	52세	15세	학원 수강생	5회 간음	징역 1년 6월	안동
3	21세	13세	트위터	1회 간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통영
4	25세	15세	개인방송 플랫폼	1회 간음	징역 3년	서울북부
5	25세	13세	인터넷 채팅앱	11회 간음	징역 4년	인천
6	29세	13세	실종아동	3회 간음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4년	부천 서울고등
7	21세	14세	복싱체육관	1회 추행 4회 유사간음	징역 2년	광주
8	23세	14세	공익근무 중이던 지역아동센터 학생	6회 간음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1년 6월	부천 서울고등
9	19세	15세	모바일 게임 오픈채팅방	2회 추행 1회 유사간음 2회 간음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 서울고등

○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제언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결정을 받게 된 만큼 입법목적에 맞게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위 결정 내용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향후 각 법원의 양형 판단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응해 나갈 것인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성행위 동의 여부’ 나 ‘물리적 강제력이나 심리적 영향력 행사 여부’ 를 살펴 피고인의 감형 사유로 참작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